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4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박기열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문장길,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광호, 이상훈,
이영실, 이정인, 이호대,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철,
최 선, 최웅식, 최정순,
한기영, 황규복, 황인구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세계와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하게 발전해가고 있으며 지능정보화사회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12월 8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4차산업혁명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서울시 또한 시대 변화에 적합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위원회 특정 성별 위촉 위원의 수를 법률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위원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여성기업지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촉직 여성 위원의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추가 함. (안 제8조제4항)
- 나. 시장이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개정된 법률을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을 추가 함.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여성경제인”을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성경제인”으로 한다.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5. (생략)

② (생략)

된 연수 및 지도

7.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여
성경제인---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문서번호	2021011100000020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박기열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1.11	
회신일 : 2021.01.18	내용문의 : 02-2180-7943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제4호~제6호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 ※ 제9조제1항제7조‘여성경제인 간의 협력에 필요한 지원’은 여성기업종합지원 센터를 통해 여성경제포럼을 개최 운영중에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 나. 추계결과 = 750,000천원(연평균 15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5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750,000천원(연평균 1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여성경제인 연수 및 지도 (제9조제1항 제4호~제6호)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소계(b)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 총 비용(b-a)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 여성경제인 연수 및 지도 : 연간 비용 150,000천원×5년=750,000천원
 - 연간 비용 : 2021년 경제정책과‘여성기업종합센터 여성기업육성지원’예산 150,000천원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